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요청대상 행위	① 모회사가 구축·운영 중인 그룹웨어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 내부 업무용 PC에서 외부 송수신이 가능한 메신저 및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③ 내부 업무용 PC의 가상화 환경에서 운영 툴(웹환경)을 통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이 망분리에 위배되는지
	※ 비조치의견서 요청서상 질의요지가 불분명하여 유선통화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후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음
판단	① 다른 계열사와 공동으로 그룹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필요한 서비스 번호(port)에 한하여 연결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 제3항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내부업무용 PC의 업무 환경에서 외부 송수신이 가능한 메신저 및 이메일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은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3호에 위반됩니다.
	③ 내부업무용 PC의 가상화 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발·운영· 보안 목적의 관리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은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됩니다.
판단이유	T 다른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은 망분리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하고, 여기서 계열사는 해당 회사와 주식보유 등을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상법상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출자관계로 연결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상법상 모회사가 구축·운영 중인 그룹웨어*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필요한 서비스번호(port)에 한하여 연결하고「전자금융감독 규정시행세칙」제2조의2 제3항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전산프로그램 변경통제, 형상관리 등에 사용되는 IT지원·관리시스템 등은 회사의 주요 IT 내부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그룹웨어가 아닌 내부업무용시스템 범주에 포함
	②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하고 접속을 금지(「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3호)해야 하므로
	○ 내부업무용 PC의 업무환경에서 외부 송수신이 가능한 메신저 및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3호에 위반

됩니다.

- ③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데(「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5호),
 - 동 단말기의 물리적 위치가 전산실 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운영 툴 (웹 환경)을 통해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더라도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하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발·운영·보안 목적의 관리자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면 이는 직접 접속 단말기에 해당하여 물리적 망분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 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